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류등 제출 거부 시 감사 요구 및 벌칙 강화 등〉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57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서류등 제출 거부 국가기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3
2.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9
3. 벌칙 강화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 · 박해철 · 김 현 · 임광현 · 권향엽 · 박민규
박홍배 · 강준현 · 위성락 · 문대림 · 송재봉 · 김태년
한병도 · 김성희 · 박정현 · 이광희 · 이상식 · 한민수
김용만 · 정일영 · 이용선 · 염태영 · 안도걸 · 박용갑
전진숙 · 장종태 · 문금주 · 오기형 · 양부남 · 정진욱
백승아 · 이해식 · 김영환 · 이연희 의원(34인)

2. 제 안 일 : 2024. 10. 23.

3. 회 부 일 : 2024. 10. 24.

※ 의안번호 : 485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전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서류등 제출 거부 국가기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개정안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해당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u>국가기관</u> 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u>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 ----- <u>국가기관 및 산하기관</u> ----- ----- ----- --- <u>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해당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주무부장관에 대하여</u> -----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

감정법”이라 함) 제4조¹⁾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나, 서류등의 제출 대상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²⁾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제4조의2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 예외 사유인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 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서류등의 제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의 주체에 ‘산하기관’을 추가하고, 서류등의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현행법상 조치

1)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주무부장관에 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해명을 삭제하는 대신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대한 감사 요구를 신설함으로써, 산하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2]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제4조의2)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조치요구 대상 행위 주체	국가기관	국가기관, <u>산하기관</u>
조치요구 요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좌동
조치요구 절차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좌동
조치요구 사항	○ <u>주무부장관에 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해명</u> ○ 주무부장관에 대한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u>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u> ○ 주무부장관에 대한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치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하여 ① 주무부장관에 대한 출석·해명, ② 주무부장관에 대한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③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³⁾할 수 있음.

이 중 ①의 출석·해명 조치는 국회가 직접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인 반면, ② 및 ③의 징계 및 형사처벌 조치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자체적 조치인 출석·해명 조치가 삭제되고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조치가 신설되게 되어, 국가기관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또는 책임 추궁이 오로지 외부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보이므로, 국회 권한의 자율적 행사 보장 측면에서 국회의 자체적 조치인 출석·해명 조치도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회’도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한 주체가 본회의인 경우에는 본회의가, 위원회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감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국회법」 제127조의²⁴⁾는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

3)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도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조문 정리가 필요함.

참고로, 감사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증언감정법은 서류등 제출 요구 거부 등과 관련한 고발 등 각종 조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⁵⁾

② 개정안은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를 규정하고

4)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2007년 4월 1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음.

있는 제4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을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개정하면서도 조치요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1항의 ‘국가기관’은 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조문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제1항의 ‘국가기관’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이하 “동행명령”이라 함)하는 제도를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전심의⁶⁾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표-3] 개정안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

동행명령 적용대상 증인	현행법	개정안
국정감사·조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	○
청문회	×	○
안전심의 (안전심의를 위한 청문회 포함)	×	○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회에 서의 안전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u>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6) ‘심의’는 본회의에서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 전체를 말함. 증인 동행명령은 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안전심사’라는 용어가 적절함.

현행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본회의·소위원회 및 반 제외)에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국정감사·조사(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② 안건심의(안건심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③ 청문회⁷⁾ 및 ④ 인사청문회⁸⁾가 있음.

그 중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⁹⁾

7)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8)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9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으므로(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410),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에 관한 본 검토보고에서는 제외함.

대 별	위원회	불출석 증인		의결일	비 고
제18대	국무총리(김태호)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	전 맨하튼 강서식당 사장	2010. 8. 25.	동행명령 거부
		○○○	전 태광실업 회장		
		○○○	전 김해시장		
	법제사범(검찰총장후보자 한상대 인사청문회)	○○○	행당동 토지 매수인	2011. 8. 4.	집행보류

9) 국회증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구인¹⁰⁾과 달리 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집행되지만, 동행 명령 거부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¹¹⁾

그런데,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전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전심의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는 동행명

10)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11) 동행명령 의결 현황(제20대 ~ 제21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국정감사	-	1	2	2	1	2	8	3	19
국정조사	66	-	-	-	-	-	5	2	73

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전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정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① 사실상 모든 절차에서 제한 없이 동행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어 동행명령제도가 남용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고 ②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안전심사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를 부친 결과 해당 개정안은 부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지 못하였음.¹²⁾

따라서,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확대 여부와 그 범위를 청문회까지 확대할지 아니면 안전심의까지 확대할지는 최근 국회의 심의 경과 및 내용과 정부의 재의요구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현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 안전심의 또는 청문회 증인까지 동행명령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므로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증인과 안전심의·청문회를 위한 증인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정이 필요함.

셋째, 현행 동행명령제도는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1988. 8. 5.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당시 동행명령제도와 함께 도입된 검증제도도 국정감사·조사에만 인정되었으나 2003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13)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증 관련 개정 전후 비교(2003. 2. 4.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3. 벌칙 강화

개정안은 ①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 ②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표-5] 현행법 및 개정안상 벌칙규정

구 분	현행법		개정안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을 회피한 증인		좌동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를 거절한 자		고의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좌동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삭제 (조항 이동 및 법정형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구 분	현행법		개정안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좌동	좌동
	신설	신설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	3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신설	누구든지 고의로 이 법에 따라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때 ¹⁴⁾	3년 이하 징역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u>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u>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고의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4)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검증을 방해한 자’를 삭제하고 있는데, 벌칙 강화를 통하여 국회 직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상 현행과 같이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현 행	개 정 안
<u>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u> 제13조(<u>국회모욕의 죄</u>)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3조(<u>국회모욕의 죄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u>누구든지 고의로 이 법에 따라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현행 「국회법」 제128조¹⁵⁾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¹⁶⁾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5)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1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¹⁷⁾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¹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한 자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¹⁹⁾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경우 처벌(3년 이하의

17)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 2022년 국정감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는 내용을 일괄 공지하였음(한국일보,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 2022. 9. 28.).

징역)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에서 ‘고의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3조(국회모욕의 죄 등)에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일한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제12조의 위반행위 주체인 ‘자’(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 제13조의 위반행위 주체인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포섭되는 것으로 보여 조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②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동일한 행위를 한 ‘자’²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형벌 규정 간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③ 처벌 대상 위반행위인 ‘보고나 제출을 지연하는 때’의 ‘지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²¹⁾

20) ‘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서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제외한 자

21) 「국회법」 제128조제4항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

④ 거절·거부 또는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 및 서류등 제출을 동일하게 처벌하면서도 거짓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자료²²⁾ 제출’만 처벌하고 있어 형벌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임.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의로 이 법에 따라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정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의 법정형과 최근 재의 결과 부결²³⁾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 벌칙규정의 법정형²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 방해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모욕의 죄(동행명령 거부·회피) 및 위증의 죄(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

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2) 개정안에서는 ‘자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류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24)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음.

위 진술·감정)에 한정하여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7]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표-8] 재의 결과 부결된 개정안상 벌칙규정²⁵⁾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증인의 국회 권위 훼손, 증인의 동행명령 거부·회피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보고나 서류등 제출 거부·지연, 거짓 자료 제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방해 등에 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신설 벌칙규정은 증인의 불출석, 보고나 서류 제출 거절, 증언·감정 거부, 증인·참고인 출석 방해 등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에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조문 체계상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13조(국회모욕의 죄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25) 개정안에서 신설된 벌칙규정만 표시함. 참고로, 정부는 재의요구서에서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허위 서류등 제출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과중하여 과잉형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

최초로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강화된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적용례를 둘 필요는 없으므로, 제13조(국회모욕의 죄 등)에 관한 적용례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표-9] 개정안 부칙 제2조

부 칙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6조 및 <u>제13조</u>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017